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1. 21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9년 1월 9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1월 11일

3. 제정 이유

- 본청의 역할을 정책기획·조정·평가·지원 중심으로 조정하고,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학교의 일부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
-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하여 교육장, 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
 - 본청의 총괄·기획 역할 수행을 위해 학교법인, 사립학교 관련 업무 및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
 -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조정
 - 소속기관 및 학교에 대한 감사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 사항 신설
-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하여 교육장, 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일부개정 및 신설로 행정권한의 범위 명시
 - 교육장의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관련 행정권한 위임사항 구체적 명시
 - 학교장에게 위임한 행정권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교육지원청에서 채용모집이 어려운 직종의 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
 - 직속기관장에게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련 행정권한 위임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본청 및 학교의 일부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, 직속기관장, 교육장, 학교장에게 위임된 교육공무직원 관련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임

- 본청의 사무 중 학교법인의 지도·감독권한,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지원사업 및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의 일부, 소속기관 및 학교에 대한 감사 업무와 학교장 위임사항 중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확정 등 인사업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,

-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교육공무직원 임용과 관련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교육지원청에서 모집이 어려운 직종의 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등

- 교육행정기관별 학교현장의 지원 역할 강화에 역점을 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